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0. 15)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제안이유

- 「도시공원법」이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고, 도시공원의 점용대상 등을 추가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관리위탁 기간, 경영수입사업, 임대방법, 임대료의 징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라. 공원 점용허가대상,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녹지점용허가대상,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점용허가의 기간, 점용시설의 철거, 점용물의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점용료, 점용료의 감면, 전대 등의 제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바. 공원시설물의 기증 및 공원시설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사.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은 시설 전체를 하는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관리위탁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 공원내에서 박람회 등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지? · 안 제3조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의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점, 체육시설 등이 있음. · 가능함. · 이미 허가된 건축물의 감소 또는 5% 이내의 증가 및 이의 변경을 1회에 한하도록 하였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91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제안년월일 : 2009. 10. 15.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점용료 산정기준인 점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
여야 하나 공시지사로 오기함

2. 주요골자

- 안 제17조제1항에서 점용료 산정 기준인 점용토지의 “공시
지가”로 정한 용어는 “개별공시지가”로 수정.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천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제1항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수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 제16조 생략 제17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 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 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면적 재산 가액은 <u>공시지가</u> 에 따른다. 제17조제2항 ~ 제33조 생략	제1조 ~ 제16조 원안과 같음 제17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 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 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면적 재산 가액은 <u>개별공시지가</u> 에 따른다. 제17조제2항 ~ 제33조 원안과 같음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 조성의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이 직접 설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한다.
2.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경영수익사업 등) 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주차장 및 체육시설, 매점 등의 사업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체육시설물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매점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 관리한다.

제7조(임대방법) ① 시장은 매점을 임대하여 관리하게 할 때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필요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의 징수 등) ① 공원매점의 임대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1년 기준으로 선납 징수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임대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원 점용허가대상)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11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쇄석 및 잔디블럭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정한다.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의 목적에 한정한다.

나.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4.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한정한다.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한다.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

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 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5.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

다.

제12조(녹지점용허가대상)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하여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

다.

제14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미이행이 어

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점용허가 시 원상회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전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미이행시에 허가자는 제2항의 사전예치금으로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후 경계 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 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면적 재산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천시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송유관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제19조(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제반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및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투기하였을 때나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③ 영 제50호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허가된 행사를 위한 차량(이륜차를 포함한다) 등은 공원, 녹지를 출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지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원 내 호수 및 연못에 들어가거나 낚시·수영 또는 물고기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2. 녹지(시민의강)에서 낚시 또는 물고기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3. 지정된 잔디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제22조(물품 등의 기증) 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공원시설(체육시설 및 주차장, 매점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23조의 공원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 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자문 및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자문 및 심의(가로수, 시민의 강을 포함한다)
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업무 관련국장, 건설업무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공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제27조(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
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7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 용 료
전주·전선·변전소·전기통신설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해당 재산가액의 10/100을 곱하여 산정(다만, 전주의 경우 1주당 1,000원으로 하되, 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5/100를 곱하여 산정)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및 가스정압 시설·공동구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액의 5/100를 곱하여 산정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해당 재산가액의 8/100을 곱하여 산정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점용면적에 해당 재산가액의 5/100를 곱하여 산정
기존시설물	점용면적에 해당 재산가액의 5/100를 곱하여 산정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점용면적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액의 5/100를 곱하여 산정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이외에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해당 재산가액의 8/100을 곱하여 산정(다만 지하시설물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 재산가액의 5/100를 곱하여 산정)

※ 비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과태료금액	비고
법 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7만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만원	
법 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만원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만원	
	2.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5만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만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7만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만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별표 1)

공 원 입 장 료

종 별	사 용 기 준	비 고
일반공원	대인 1회당 100원 소인 1회당 60원	· 단체의 기본요금의 30%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음 · 조기산책의 경우는 1개월당 10일분의 입장 료를 징수함.

- 비고 : 1. 대인 : 만 13세이상 65세미만의 자
 2. 소인 : 만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
 3. 단체 : 30인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함

(별표 2)

공 원 및 공 원 시 설 사 용 료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운동장 사용 상시영리행위 (사진촬영)	1회 1인 1년	평당10원 100,000원	경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 공 개입찰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영화촬영	주간 1회 야간 1회	50,000원 100,000원	
녹 화	1시간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유희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	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규모, 투자비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정하며,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 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별표 3)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종 별	단 위 기 준	금 액
운동시설위탁료	영 업 목 적 시 영 업 목 적 이 외	전체수입액의 10/100 당해재산가액의 1/100
유회시설위탁료	-	전체 수입액의 10/100
기타시설위탁료	연 액	인근임대료 추정액의 100/100

(별표 4)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비 고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 외 주차장	·전용면적 재산가액의 8/100 ·전용면적 재산가액의 3/1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 동구	·전용면적 재산가액의 3/100	
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를 위한 단기가설 공작물	·전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4. 기존시설물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100	
5.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 와 유사한 점용	(점용면적재산가액-제외금액) ×10/100	
6. 전주, 전선, 변전소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7.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8.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9. 통신시설, 축성시설		

[수정안 포함]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 조성의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한다.
2.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의시설 또는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

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경영수익사업 등) 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주차장 및 체육시설, 매점 등의 사업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체육시설물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매점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 관리한다.

제7조(임대방법) ① 시장은 매점을 임대하여 관리하게 할 때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필요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의 징수 등) ① 공원매점의 임대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1년 기준으로 선납 징수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임대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원 점용허가대상)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는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11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쇄석 및 잔디블럭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정한다.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

다.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에 한정한다.

나.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4.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한정한다.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한다.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 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5.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녹지점용허가대상)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

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

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하여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

축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미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점용허가 시 원상회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전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미이행시에 허가자는 제2항의 사전예치금으로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후 경계 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 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면적 재산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천시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송유관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제19조(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제반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및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투기하였을 때나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③ 영 제50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허가된

행사를 위한 차량(이륜차를 포함한다) 등은 공원, 녹지를 출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지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원 내 호수 및 연못에 들어가거나 낚시·수영 또는 물고기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2. 녹지(시민의강)에서 낚시 또는 물고기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3. 지정된 잔디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제22조(물품 등의 기증) 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공원시설(체육시설 및 주차장, 매점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23조의 공원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 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자문 및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자문 및 심의(가로수, 시민의 강을 포함한다)
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업무 관련국장, 건설업무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공무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제2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